

17. 의무유급/제적/재입학

* 의무유급

의무유급제도는 학업부진자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학사경고 횟수에 따라 유급 하도록 하여 학생에게 학업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의무유급제도

- 학칙에 따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의무유급 조치되며, 유급 학기의 성적은 무효처리됩니다.
- 의무유급 대상자 중 직전학기 포함 연속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최대 2개 학기까지 의무유급이 가능하며, 지정기간 내에 GLS를 통해 의무유급 학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 지정기간 내 의무유급 학기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직전학기 포함 연속 2회 이상 학사경고가 아닌 경우는 1개 학기 의무유급 처리됩니다.
- 의무유급 학기의 성적은 무효(학사경고 기록 포함)로 합니다.
- 유급학기의 계절수업 및 해당학기 이후 휴학 중 계절수업을 통해 취득한 성적도 무효 처리됩니다.
- 의무유급 2회 이후 재차 연속3회, 통산4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학사경고제적처리 됩니다.
- 수료/수여대상자가 졸업 직전학기 학사경고로 인해 의무유급대상이 될 경우, 유급 조치가 선행됩니다.

* 제적

제적은 자퇴, 학사경고(의무유급 2회 후 재차 연속3회, 통산4회 받은 경우),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제적처리가 되면 후에 재입학을 신청하더라도 재입학 여석부족 등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학적유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학사과정생의 학사경고 제적

- 의무유급 2회 이후, 학사경고 횟수가 입학시점부터 시작하여 연속3회 또는

2000학년도 1학기부터 시작하여 통산4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학사경고제적 처리됩니다.

- 2001학년도 이후 입학한 신입학생으로서 최초등록학기부터 2개 학기 연속으로 학업성적이 각각 평점평균 1.00미만인 학생은 학사경고 제적 처리됩니다.
- 재학 중 받았던 학사경고는 유급, 제적,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대로 유지되며 재입학, 복학 시에도 계속해서 적용되어 학사경고의 연속 또는 누적 횟수에 적용됩니다. 다만, 학사경고제적자가 재입학한 경우에는 재입학 이후부터 새로 산정합니다.
- 학사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제적될 경우(재차 학사 경고를 연속3회, 통산4회를 받은 경우)에는 영구제적되며, 재입학이 불가합니다.
- 수료/수여대상자가 졸업 직전학기 학사경고로 인해 제적대상이 될 경우, 제적 조치가 선행됩니다.

● 자퇴제적

- 학생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학생 및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제적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학생이 학사운영팀에 방문하여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생의 경우 지도교수 혹은 학과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휴학만료제적

-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적 처리됩니다.
- 입대휴학한 학생이 체대일이 포함된 당해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사일정에 정해진 휴·복학 기간에 체대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적 처리됩니다.

(예시) 전역일자가 2021년 5월 중에 있는 학생은 2022학년도 1학기 개강 전까지 반드시 체대복학 또는 일반휴학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 후 재입학해야 함

● 미등록제적

- 재학생으로서 학사일정에 정해진 등록기간 또는 휴학기간까지 등록 또는 일반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제적 처리됩니다.

★ 재입학

재입학은 제적된 학생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재입학을 신청하여 다시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재입학 신청은 매년 1월, 7월 학사서비스(GLS)를 통해 진행됩니다.

- 재입학 신청
 - 재입학 신청은 제적일로부터 1년(2개 학기)이 경과한 후에 가능합니다.
 - 2020년 3월 22일 제적되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2021년 3월 22일 이후에 신청 가능하므로, 2021년 2학기 재입학신청기간인 2021년 7월 19일~23일에 재입학 신청 가능함
 - 단, 입대휴학만료제적자 및 졸업/수료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학사경고 제적된 학생의 경우 재입학 제한기간을 두지 않습니다(직후 재입학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
 - 재입학 가능여부는 정원내외별 재입학 여석과 재입학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재입학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입학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입학자 수업연한 재부여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에게는 제적 전 등록한 학점 및 취득한 학점에 따라 학년 및 학기를 조정하여 수업연한을 새로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학사경고제적자 및 징계제적자의 재입학 제한
 - **학사경고제적자 및 징계제적자가 2000년 3월 1일 이후 재입학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사유로 제적되면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

